

2001년 수의위생시책



이 주 호

농림부 가축위생과장

서 론

2001년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21세기를 시작하는 첫해이다. 국가적 측면에서는 남북관계에서는 남북화해 및 교류증진을 바탕으로 통일을 향한 디딤돌들을 확실하게 놓아 상호공존의 틀을 확보하는 한해이고, 경제적으로도 그간 IMF사태 극복을 통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최근 다시 대두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철저한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한 경제의 기초체질 개선으로 선진형 경제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한국호를 만들어 세계속의 한국으로 우뚝서는 한해이어야 할 것이다.

지난 해는 우리 가축위생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 1924년이래 66년만에 가축전염병중 가장

악성이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강한 구제역이 우리나라에 발생됨으로서 이를 조기에 박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느라 정말 그야말로 눈코 뜰사이 없는 나날이었고, 지금도 이러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축산식품위생과 관련하여 지난해는 우리나라의 도축장위생수준을 획기적으로 한차원 높일 수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가 국내에 도축장에 의무적용되기 시작한 첫해로서 이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컨설팅지원, HACCP 위생시설자금지원, 관련 교육·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정부의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 시책을 되돌아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 우리 가축위생당국이 추진하여야 할 주요 시책을 독자여러분들에게 밝혀 이해를 돕고자 한다.

가축위생시책 200년 실적 및 2001년 계획

① 가축방역사업

가. 2000년 주요 추진시책

① 목적

- ◆ 가축전염병(법정전염병 58종)발생 및 확산 방지로 축산업경쟁력 제고
- ◆ 안전축산물 생산·공급으로 공중보건위생 향상

② 주요방역대책

- ◆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살처분·이동 제한 등 긴급방역조치
 - 구제역, 돼지콜레라, 부루세라, 결핵병, 광견병 등
 - 살처분·도태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금 및 장려금 지급
- ◆ 예방약이 개발되어 있는 가축전염병은 예방접종으로 발생 최소화
 - 돼지콜레라 : 예방접종 100% 실시('01.2월말까지)
 - 소규모농가 예방접종 지원 : 예방약 공급 및 기술지원
 - 도축장·농장에서 채혈하여 예방접종여부 확인검사
 - 뉴캐슬병 : 농가 주도의 예방접종 100% 실시
 - 부화장에 예방약 공급 및 예방접종 미실시자에 대한 제재
 - 탄저·기증저·광견병 등 : 질병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약 공급
- ◆ 검진·기생충 구제 약품비 지원 및 혈청 검사 실시
 - 부루세라·결핵·오제스키병 : 가축방역기관의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 양성 : 살처분, 의양성 : 재검진 및 도태권고

- 소진드기·꿀벌 응애류에 대한 기생충 구제약품 공급
- 기타 주요 질병(42종)에 대한 혈청검사 실시
-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방역장비 및 인력지원

③ 구제역·돼지콜레라·뉴캐슬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 ◆ 구제역 : "별도 참조"
- ◆ 돼지콜레라 : 예방접종 100% 실시 및 확인 검사 수행
 - 혈청검사 40만건, 예방접종률 96% (과태료 처분 225농가)
 - 구제역 발생으로 전국적 예방접종 중지일정 조정 ('00.10→ '01.3)
 - * 일본은 당초 계획대로 '00.10부터 예방접종 중지 (접종서 도도부현 허가)
- ◆ 돼지오제스키병 : 근절기반 조성 및 돼지 수급안정을 위한 발생지역 중심 모돈일제검사 실시
 - 14개 시·군 2,511농가 76천두 검사, 양성모돈 1,297두 도태중
 - 뉴캐슬병 : 부화장에 대한 예방약 공급 및 도계장 혈청검사
 - 소기립불능증 : 발생농가 지원 및 원인규명 연구용역 실시중
- ④ 민간방역단체 운영활성화 등 방역체계 개선
- ◆ 돼지콜레라막달비상대책본부를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로 개편
 -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예방접종·농장채혈 및 소독 등 민간방역실시
 - 예방접종 시술비, 교육·홍보 등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
 - 시군 방역요원(128명)에 대한 방역보조원 위촉

- ◆ 공수의 제도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하기 위하여 국비 공수의 수당지급을 없애고 실적에 따른 예방접종기술비 지급으로 전환
 - 지방비 공수의제도 존치로 예찰, 무료진료 등 업무수행
-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방역보조원 인건비 지원
 - 176명, 880백만원(국비 50%)
- ◆ 가축방역관(570명)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
 - 수의과학검역원 및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 대상

나. 2001년 중점추진 계획

<기본방향>

- ◆ 주요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강화
 - 구제역·돼지콜레라·돼지오제스키병·닭뉴캐슬병·가금인플루엔자 등 5개 질병에 대한 중점방역
 - 기타 질병은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검진·예방약 공급 추진
- ◆ 민간방역단체 운영 활성화로 정부와 역할분담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공동방역사업단을 통합·운영
 - 양축농가의 방역비용 부담으로 방역에 대한 책임감 제고

① 구제역·돼지콜레라 청정국가 지위획득으로 축산물 수출재개

- ◆ 예찰활동 및 혈청검사 확대, 일제 소독 등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 발생지역은 7,500두, 비발생지역은 20천두 혈청 검사 실시
 - 농장·도축장 등에 대한 일제소독 지속실시

- 방역 CPX훈련 실시(2월중)
-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100% 실시 및 예방접종 중지후 관리방안 마련
 - 예방접종 중지후 방역관리 행동지침(SOP)을 공청회 등을 거쳐 수립(2월말)

② 돼지오제스키·닭뉴캐슬병은 2005년 근절 목표로 방역강화

-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지후 동사업에 투입되었던 방역인력의 일부를 오제스키병과 뉴캐슬병 방역사업에 투입
- ◆ 모돈·종돈 등에 대한 오제스키병 검사 지속실시
 - 양성가축의 조기도태 및 양성농장에 대한 주기적인(분기) 반복 검사
 - 발생지역 중심의 예방접종 지속 실시
- ◆ 뉴캐슬병 예방약 100%(부화장→부화장+농장)공급 및 예방접종여부 확인 강화
 - 유통단계(부화장, 중추사육농장, 종계장, 출하 등)별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및 도계시 예방접종확인서 제출 의무화
 - 주기적인 혈청검사와 농장점검을 통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위반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제재 강화

③ 부루세라병 방역대책 개선

- ◆ '98년 부루세라 예방약 피해사건 이후 예방접종 없이 검진 및 살처분정책 추진
 -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검진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소요 과다
- ◆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역별로 농가자율 예방접종 제도 도입 방안 추진
 - 예방접종 필요성에 대한 농가, 낙농단체 등의 공감대 조성

- ◆ 검진결과 양성가축 발생농장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 도태권고 대상에 대한 표시 및 이동시 검사증명서 휴대의무 부여

④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공동방역사업단의 통합으로 민간방역 조직일원화

- ◆ 민간방역 단체의 운영 정상화시까지 운영비 지원
 - 예방접종·채혈·홍보 등 가축방역사업의 위탁 및 사업비 지원
 - 농가로부터 가축방역사업비(접종비)의 일부를 징수하는 제도 정착
- ◆ 민간방역단체에 대한 시장·군수의 관리 감독 권한 강화

⑤ [공익수의사]제도 신설 및 공수의제도 운영 활성화

- ◆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의과대학 졸업자에게 병역특례 부여
 - 가축방역관으로 위촉 예찰 및 검진 등 가축방역 업무 수행
- ※가장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 제정
- ◆ 지방비 공수의에게 접종기술비를 지급토록 하여 공수의 제도 운영 활성화
 - 기술비 지급의 적정성 확인검사 강화

⑥ 가축방역사업비 지원방식 개선

- ◆ 예방약·소독약 등 입찰조건 강화 및 쿠폰제 확대 실시
 - 적정약품 구입을 위한 입찰조건 제시 및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쿠폰제 지급 대상 확대(1종 → 3종)

- ◆ 방역재료비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재배정 사업으로 전환 등(2002년)
 - 시·도간, 시·군간 사업비 조정기능 강화
 - 예방약, 검사재료비 및 소독약 등 긴급방역비
 - 국비예산의 방역본부 등 민간방역단체 경상보조 전환

② 축산물안전성 제고대책

가. 2000년 주요 추진현황

① HACCP 시행

- ◆ 도축장 : 15개 도축장에 대한 HACCP 의무 적용 추진
- ◆ 축산물가공장 : HACCP 적용품목 및 적용업소 확대
 - ('99)6개 품목류 28개소 → ('00) 8개 품목류 31개소
- ◆ 조속한 시행을 위한 도축장 위생시설 및 컨설팅 자금 지원
 - 위생시설자금(1개소당 350백만원 융자) : 14개소
 - 컨설팅자금지원(1개소당 7백만원 보조) : 15개소
- ◆ 민관합동「HACCP 시행반」가동으로 HACCP 적용희망업소 지원
- ◆ 정부 위생당국 HACCP 담당자에 대한 국내외 교육 훈련 실시
- ◆ HACCP 적용의 토대가 되는 작업장 위생 표준운용요령(SSOP) 운용실태 조사 및 미흡 작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및 보완지시

② **위해축산물 회수제도(Recall) 조기정착**

- ◆ 유해축산물의회수절차등에관한규칙(농림부령)
- ◆ 축산물위생위험 긴급대처요령(위생SOP) 수립 시행

③ **축산물 모니터링 및 위생감시 강화**

- ◆ 식육중 공중위생상 위해물질의 식품유입을 차단
 - 위해잔류물질 : 45종, 99,820건
 - 미생물 : 지표세균(대장균등), 도축장별 축종별 월2회 이상, 43,650건
- ◆ 국민다소비식품 중심의 유통중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④ **원유검사공영화 추진**

- ◆ 유대지급과 관련되는 체세포수·세균수·유지방에 대한 공영검사
- ◆ 원유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장비 및 검사보조원 지원
- ◆ 연말까지 90% 이상 참여 목표

나. 2001년 중점 추진 계획

①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정비**

- ◆ 식품가공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새로운 축산물유형의 지속적 출현에 대응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기타 축산물"을 신설
- ◆ "식용란"을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에 포함
 - Task Force 팀을 구성하여 계란등급제 추진 등과 연계하여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방안 마련으로 계란 안전성 보증
- ◆ 규제개선사항, 지방이양업무, 민원불편사항 등을 반영

② **Farm to Table 단계의 일관된 위생 관리체계구축 지속 추진**

- ◆ Farm to Table 전과정에 대한 위험평가(Risk Assessment)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위생관리방안 수립
 -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 과태료(100만원 이하)처분 등 위생지도 단속 강화
 - 부산물처리 등 취약지점에 대한 위생관리를 시행 규칙에 명문화하고 집중적인 위생관리실시
 - Cold chain system 정착을 위한 위반차량 업소 단속방안 강구
- ◆ 체계적 위생관리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인력 강화
 -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필수 위생검사장비 지속지원

③ **HACCP 적용 확대 및 관련업계 지원**

- ◆ 도축장 HACCP 적용확대
 - 2001년 36개 중규모 도축장에 HACCP 의무적용
 - 도축장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HACCP 교육 강화
 -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 미적용도축장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
- ◆ 축산물가공품 HACCP 적용 확대
 - 8개 품목류(2000년) → 13개(2001년)
 - 포장육 양념육 분쇄육가공품 저지방우유류 아이스크림류 신규추가 ⇒ HACCP 적용모델 및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 농장단계 HACCP 적용을 위한 조사·연구
 - 농장단계 선진위생 방역관리기법인 우수농장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 : GAP)의 도입 여부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 용역 추진

◆ HACCP 적용도축장 위생시설자금 및 컨설팅 자금 지속 지원

- 위생시설자금(2002년까지 47개소, 16,103백만원, 융자)
 - ('99) 8개소 ⇒ ('00) 14 ⇒ ('01) 15 ⇒ ('02) 10
- 컨설팅자금(2002년까지 50개소, 350백만원, 보조)
 - ('00) 105백만원, 15개소 ⇒ ('01) 105, 15 ⇒ ('02) 140, 10

◆ 작업장의 HACCP의 효율적 시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HACCP 적용 작업장 미생물검사요령"(농림부고시) 제정

◆ 대국민 HACCP 교육 홍보 강화

④ 보관업 및 판매업의 SSOP 적용

◆ 현행 위생관리체계가 도축장 및 축산물 가공장에 집중되어 있으나 위생문제의 대부분(약90%)이 유통과정에서 발생됨을 감안하여 축산식품 보관, 운반, 판매 단계에 대한 위생관리방안 수립

- 작업장별 위생관리기준(SSOP)을 축산물 보관업 및 판매업에 적용하여 위생관리강화

◆ 축산물Cold Chain 유통체제 구축

- 축산물보관업, 우유류판매업 등에 냉동(장) 보관 및 유통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등 위생감시 강화

⑤ 2001년도 식육중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 도축장 미생물관리강화

- 일반세균수 기준 강화 : ('99)500만cfu/㎖ → ('00)100만 → ('01)10만
- 위반 작업장에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법개정 추진
- 권장기준 위반도축장은 인터넷 농림부 홈페이지 등에 명단 공개

◆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 강화

- 식품공전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113종에 모두에 대하여 검사 실시
- 잔류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가축을 출하한 농가에 대한 계도 및 3개월간 특별관리

⑥ 원유검사공영화 정착

◆ 원유검사공영화 참여율을 현행 84%에서 2001년 상반기중 검사공영화 제도 완전 정착

◆ 기능성 우유 등 부분적으로 원유검사공영화에 참여하지 않는 원유에 대하여도 공영검사에 참여하도록 유도

◆ 장비현대화를 위한 예산지원 및 검사보조원 확보·지원 방안 강구

- 돼지콜레라 방역요원을 지속적으로 원유검사보조원으로 활용

⑦ 오리 사슴 토끼 등에 대한 도축위생방안 강구

◆ 오리등 8개 축종이 2003.1.1부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도축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이들 가축에 대한 검사공영화, 검사인력 확보, 도축장 설치 등에 관한 사전 준비 필요

- 2001년 상반기중 연구·용역 추진

⑧ 식육검사보조원(Meat Inspector) 제도 도입 검토

◆ 미국, EU 등과 같이 도축검사에 대한 일정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식육검사보조원으로 육성하여 이들에게 일정한 식육검사업무를 부여하는 도축검사체계의 전환 필요

- 이를 위한 연구·용역 필요(2001년중)

3 수입동물 및 축산물 검역강화

가. 2000년 주요추진시책

<추진 실적>

- ◆ UR협상 타결에 따른 동물 및 축산물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제1단계('92~'95) 검역강화대책 수립 추진(102억원 투자)
- ◆ WTO출범에 따른 동물 및 축산물 검역 기반의 과학적 논리정립과 정밀검사 강화를 위한 제2단계('96~'97) 대책 수립 추진(113억원 투자)
- ◆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선진화를 위한 내실화와 지속가능한 반전체계 구축을 위한 검역기능 선진화 제3단계('98~2000) 수립 추진

①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검사제도를 WTO/SPS협정 및 OIE, CODEX 규정에 일치시키기 위한 다각적 조치

- ◆ OIE List A 질병을 제1종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수출입 검역·검사제도의 선진화 구축(가축전염병예방법)
- ◆ 축산물가공품 관리업무의 당부이관에 따른 검역·검사제도의 정착(축산물가공처리법 전면개정)

② 동물 및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을 국가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국가별로 다양한 위생 상황에 긴밀하게 대처

- ◆ ('92) 18 → ('96) 39 → ('98) 54 → (2000) 59개

③ 수출입 동물 및 그 생산물의 효율적인 검역과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검역시행청을 운영중임

- ◆ ('92) 202 → ('96) 201 → ('98) 225 → (2000) 309개

④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다양화, 다변화에 따른 검역·검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검역원의 조직 및 인력을 보강

- ◆ 다이옥신 등 신종 유해성물질에 대한 검사 전담부서 설치(특수독성과) 등

⑤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검사를 완벽하게 하고자 검사시설·장비 등 보강

- ◆ 정밀검사실험실 신축 및 동물검역 계류사 등 시설 23,399㎡ 증설

나. 2001년 중점추진계획

<기본방향>

- ◆ 구제역 청정국 지위 재인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 ◆ 구제역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 ◆ 제4단계 검역·검사계획(2001~2003)의 수립과 착실한 집행
- ◆ 검역·검사능력의 재평가를 통한 검사능력 배가추진
- ◆ 국제수역사무국 지정 List A 질병중 우리나라 비발생 질병과 BSE등 주요 List B 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
- ◆ 에볼라병, 헨드라병, 니파병 등 신종 동물질병의 유입방지와 검역강화
- ◆ 식용축산물의 위생검사 강화로 안전성 확보

① **국제수역사무국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재인정을 위한 단계별 조치**

- ◆ 2001.1.21일 주간에 제주도를 청정지역으로 인정 추진
- ◆ 제69차 OIE 총회(5.20)시 구제역 방역 추진 내용 발표
- ◆ 제2차 동아시아지역 구제역 검역대책회의 개최(6.18~6.23, 서울 팔레스호텔)
- ◆ 구제역 청정국 재인정 추진(9월중순,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

② **검역역량을 충당원하여 구제역 등 악성가축 전염병의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

- ◆ 불법 휴대육류 검색강화 및 미신고자 고발 등 공·항만 검역강화
- ◆ 품목별, 전염병별 검역방법의 개선
 - 수출국의 위생상황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품목별·전염병별 검역·검사방법 수립
- ◆ 국내 비발생 OIE List A 전염병(12종)과 주요 전염병별 발생국가 수입금지 검토

③ **제4단계(2001~2003) 검역·검사 선진화 대책을 수립 추진**

- ◆ 검역시설 등 Hardware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검역인력의 전문화, 검사장비의 현대화, 노후장비의 교체 등 Software중점 보강
- ◆ 부족한 검역·검사인력을 관계부처와 협의 충원하되, 충원기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외부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방안 강구

④ **검역·검사제도의 국제화로 통상마찰 사전 해소**

- ◆ 국가별 가축위생상황에 따른 위생조건 제정
 - 수입위생조건인 다양화, 품목별 전염병별 과학적 근거자료 작성

- ◆ 불법 휴대육류 검색강화 및 미신고자 고발 등 공·항만 검역강화

- ◆ 품목별, 전염병별 검역방법의 개선
 - 현행의 무작위 검사에서 수출국의 위생상황에 따른 검사항목 선정 등 검역·검사강화 방법의 수립
- ◆ 국내 비발생 OIE List A 전염병(12종)의 진단 및 유입방지 방안 강구

⑤ **수출국의 OIE List A, 주요 List B 가축전염병 발생내용, 유해성 물질 사용실태, 병원성 미생물 검출실태 등을 신속파악 대처**

⑥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재유입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공조체제의 강화**

- ◆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부터의 동물 및 축산물 밀수입 단속 등을 위한 관련기관 합동단속단 구성·운영
- ◆ 여행객의 신발소독 및 수화물의 밀반입 축산물의 검색체제 강화
 - 검색의 100% 실현을 위한 검색요원의 CPX훈련 실시
- ◆ 공항·항구·여행사·선사등에 대한 체계적 홍보 실시

⑦ **신종동물 전염병에 대한 전문검역 기술확보와 전담부서 신설**

- ◆ 신종동물 전염병의 발생상황 신속 입수 대처

⑧ **우리나라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을 위한 악성전염병 발생국가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역협정 구축(가격하락시 양축농가 보호)**

⑨ **수입 식용축산물 검사와 동물검역실태를 정례적으로 소비자, 축산농가에게 설명하여 신뢰성 구축**

⑩ 검역시행장의 검역물 관리 강화

- ◆ 검역시행장에서의 검역물 입·출고관리 전산화 추진

4 당면현안사항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① 주요 개정내용

- ◆ 병성감정·혈청검사·역학조사 제도화
 - 가축의 소유자 등은 시·도 가축방역기관 또는 검역원에 병성감정을 의뢰
 - 가축방역기관장은 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전염병의 발생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혈청검사 실시
 -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 실시
- ◆ 가축방역시스템 보완
 -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발생의 경우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방역조치 지시
 - 병성감정·혈청검사·역학조사결과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검역원장이 시·도지사에게 방역조치 권고
- ◆ 예방접종·검사가축의 관리 강화
 -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에게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휴대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명령
- ◆ 명예가축방역감시원제도 신설
 - 예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사료판매업자·동물약품판매업자·검사보조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

② 후속조치사항

- ◆ 시행령
 - 명예감시원의 위촉절차·임무 및 수당 지급 등 규정
- ◆ 시행규칙
 - 역학조사 협조 의무 축산관련단체장, 역학조사 실시시기, 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 규정
 - 검사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휴대대상 가축 및 절차 등 규정
 - 도태권고대상의 표시방법 규정
 - 혈청검사 및 검역관련 수수료 규정
 -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방역조치를 지시할 가축전염병 규정

나. 구제역 재발방지대책 추진

1) 추진상황 평가 및 문제점

① 예찰·소독·예방접종 가축의 방역관리

- ◆ 전국 예찰의무요원(2,348명)을 지정, 예찰 의무보고제 정상추진
 - 시군 예찰협의체는 운영이 미흡
- ◆ 재발확인을 위한 전국 혈청검사(계획물량의 86%) 결과 전두수 음성
- ◆ "전국 일제소독의날(3회 실시)" 및 시·도별 "자체소독의날"을 정하여 발생지는 월 2회, 기타지역은 1회이상 소독 정상 추진
 - 다만, 한우농가의 경우 소독의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 예방접종 가축(662천두)에 대해 이동제한조치와 낙인 등 접종표시를 하고 이동시 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하고 있으나 낙인표시율(57%)과 이동제한 조치의 이행이 미흡
- 그 결과 비발생 지역에서 항체반응이 나올 경우 예방접종 항체반응 또는 감염항체인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

② 가축방역시스템 보완 및 공항만 검역강화

- ◆ 중앙과 지방 방역조직의 연계제고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의결(12.20)
- ◆ 이번 구제역 방역경험을 토대로 방역·수급·지원대책을 포괄한 긴급행동지침(SOP)시달(8.30) 및 방역실시요령 개정(8.18)
- 구제역 방역훈련을 을지연습기간(8.21~25)중 실시
- ◆ 여행객의 휴대육류 검역 및 구제역 발생국가산 수입건초에 대한 소독강화

2) 사후관리대책 보완방안(12.23 장관 방침)

①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대상 일제정비로 출하(매매)시 미신고 농가 구제조치

- ◆ '01.1.30까지 현지조사를 통한 접종가축 잔여두수 정리
- ◆ 1월중 축산국(20명) 및 검역원(70명) 직원 19개 시군 현지출장 조치
- 1월초 점검반 일제교육 실시 계획
- ◆ 일제정비기간 경과후 위반농가 사법기관 고발조치

② 염소·사슴·돼지의 자가소비 특별조치로 도축장 출하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접종 가축의 조기 도태 유도

- ◆ 관할 도지사가 자가소비지역 잠정 고시('01.3.31까지 허용)

③ 돼지를 제외한 접종가축의 낙인표시방법 보완, 사후관리 강화

- ◆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낙인 외 목걸이 부착 병행실시
- ◆ 소독, 사후관리 등 취약농가 점검스티카 부착 및 영세·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공동방제 실시

④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홍보강화

결 론

지금까지 농림부등 가축위생당국이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하였고, 금년 한해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무엇인지를 밝혀 독자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글이 최일선에서 축산물위생 및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수의사여러분들에게 관련업무 수행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농림부등 정부위생당국이 추진하는 업무에 여러분들께서 아낌없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